

지역이민정책 추진 : 쟁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정 동 재**

육성형·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민정책의 중심 역시 이주민들이 실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에 맞물려 정부는 근자에 들어 본격적으로 지역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현재 지역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은 지역들이 겪고 있는 내생적인 문제(인구위기, 인력난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도구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이주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비도심 지역으로 ‘유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체류 이후 지속적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지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 정부 간 관계 차원에서 이민정책 추진 과정상 지역이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선 역시 모호하다. 해외 국가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고는 이주민의 유치(attraction)보다는 유지(retention)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비자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이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전략을 제안한다.

I. 서 론

육성형·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지역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종래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설계한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던 단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이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되는, 지역기반의 이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계절

* 이 글은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원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이규용 외 (2025),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의 제14장 「지역이민정책 패러다임 구축」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djjung@kipa.re.kr).

근로 외국인력제도(2015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2017년부터 정규 사업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022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2025년) 등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양상이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도 외국인/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온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2012년, 27개 지자체 참여) 설립 및 운영, 외국인/이주민 관련 지자체 조례의 증가¹⁾, 외국인/이주민 관련 지자체별 전담조직 신설²⁾, 지역 차원의 외국인/이민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³⁾ 등이 최근 들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이민정책 추진 필요성의 확대는 종래 진행되어온 정부의 이민/외국인 정책이 보여준 내생적인 한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이 중요한 정책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반면, 국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기반의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당위적,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추진이 향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이민정책의 방향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지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본고에서 다룬다.

II. 지역이민정책 추진 배경

1.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 및 도심 중심의 체류 경향

글로벌 국제이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2025)에서 발간된 최신 통계자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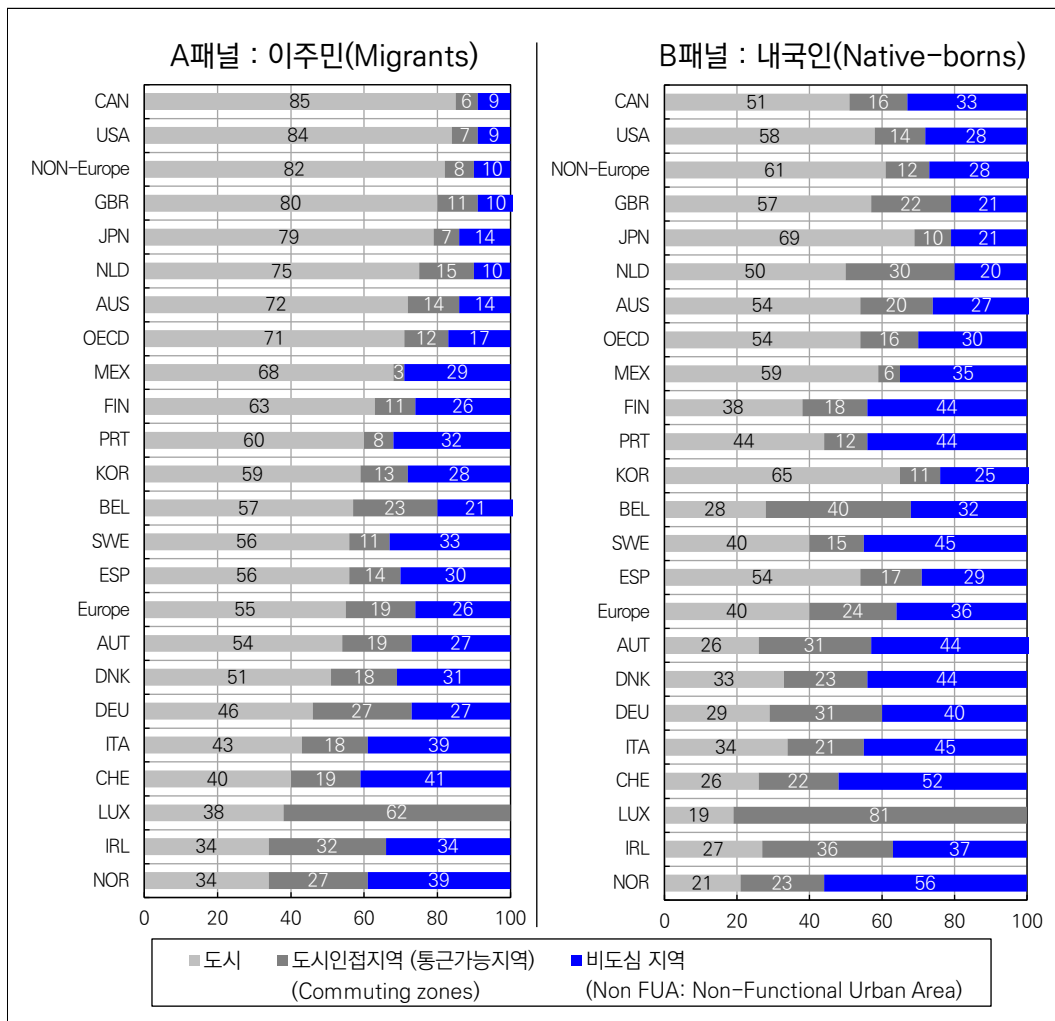
- 1) 지자체(기초, 광역) 차원에서 외국인/이주민 관련 조례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60~70%에 달하는 지자체들이 외국인/이주민과 관련된 조례를 채택할 만큼 보편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상 검색어로 “외국인”, “이주민”, “이민자”,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검색하면 대략적인 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 2) 2023년 이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 사례로 경북도(외국인공동체과, 2023년), 전남도(인구청년이민국, 2024년), 전북도(외국인국제정책과, 2024년), 경기도(이민사회국, 2024년), 서울시(글로벌도시정책관, 2024년), 충남도(외국인정책과, 2024년), 충북도(외국인정책추진단, 2024년) 등이 있다.
- 3) 근자 들어 지역 차원의 이민/외국인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례로는 서울시(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2024년), 경북도(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2024년)를 들 수 있다.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적인 국제이주 규모는 3억 명을 넘어 1990년 1억 5천 4백만 명 수준의 거의 2배 이상을 초과할 만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내 해외출생 국적자(foreign-born) 비율은 회원국 총인구의 11%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하며, 해당 비율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Astruc-Le Souder et al., 2024). 한국 역시 글로벌 이주 흐름을 반영하여 체류 외국인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봉쇄로 인해 일시적인 감소추세(196만 명)를 보였지만, 이후 3년 만에 26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빠른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법무부, 2025b).

국내 이주민들의 체류 패턴을 보면 이주민들의 장기체류 경향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출입국관리법」상 90일 초과 “장기체류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비율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 3명 중 2명꼴에 달할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 80.1%를 넘어 현재까지 75~80%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이다(법무부, 2025b). 등록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분류 시 2025년 2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가 22%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영주(F-5) 체류자격자가 14%, 결혼이민자(F-6)가 10%, 방문동거(F-1)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각 6%를 차지하는 양상이었다.

국내 장기체류 이주민 규모의 증가는 이들이 이주 수용국 내 정착하여 살아가는 체류 지역과도 연관되며, 이들의 유입 및 정착은 해당 지역에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도시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내국인들이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심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주민들도 시간이 갈수록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일자리 접근이 용이하며, 자신들보다 먼저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동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 및 대도시 인접 지역에 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Beauchamp & McMahon, 2023; Esses & Cater, 2019). 2030년경에는 전 세계 도심지역에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수준이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Stump, 2022). 국내 이주민들의 체류지역 패턴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2024년 3월 기준 등록외국인 137.4만 명 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76.9만 명(56%)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하영, 2024). 등록외국인들의 20%는 경기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평택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경남 김해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조하영, 2024), 수도권 체류 선호 양상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역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지이거나 제조업 등 일자리가 많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OECD 회원국 이주민의 체류 패턴을 도심(대도시+도시 인접지역)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대다수의 OECD 국가에 유입된 이주민들 역시 내국인들보다 더욱 강한 도심 거주 선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민들 역시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심 지역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거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이주 수용국만이 아닌 OECD 회원국 대다수

[그림 1] OECD 회원국들의 이주민 vs. 내국인 체류 경향 비교 : 도심 vs. 비도심 지역



자료 : Astruc-Le, Heese, Hoffman, Kleine-Rueschkamp, & Özgüzel(2024), "The OECD Municipal Migration Database: Going Granular", p.26.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Akbari, 2023).

이주민들의 대도시 위주의 정착 및 체류 선호 경향은 이주 수용국 내 지역별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는바,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어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대도시와 달리 비도심 지역에 더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비도심 지역의 경우 내국인 인구의 자연 감소(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소(구직을 위한 청중장년층의 타 지역 이동) 현상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로서 이주민의 자발적인 유입 및 정착 역시 도심 지역에 비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leave, Wark & Kyeremeh, 2023; Stump, 2022). 근자 들어 정부가 지방소멸 등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민 및 외국인 이슈를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점 역시 이러한 비도심 혹은 비수도권 지역들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2000년대 후반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긴축경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은 이주민들의 지역 유치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거주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정책 대상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지역 내 유입되면서 발생시키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노동력 보완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비도심 지역 내 사업체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력/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외국인(력)의 비도심 지역으로 유입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 역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도시 중심의 이주민 유입 및 정착 경향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지역이 처한 내생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 간 관계 차원에서 이민정책 : 지역의 역할 재조명 필요

전 세계적으로 개별 국가의 이민정책은 중앙/연방정부의 소관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Scholten & Penninx, 2016). 이민법 등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령상 ‘어느’ 정부가 이민 혹은 이주민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유입 및 체류하는 이주민 관련 이슈는 종래 송출국과 유입국이라는 국가 간 대외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에게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은 국경관리와 국가안보 등 대외적 현안이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주 수용국 내 이들의 장기체류 경향이 심화되면서 관련 이슈들은 종래 관심사였던 대외정책의 차원을 넘어 이들의 지역 정착과 내국인들과 공존, 그리고 사회통합과 같은 국내 이슈들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대외적 사안에서 국내 현안으로 이동하면서 정책당국의 이주민 관련 관심사들 역시 변화하게 되는바, 지역경제 발전과 이주민들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내외국인 간 공존 및 정책영역별(건강/의료, 복지, 교육, 고용/노동, 주거 등) 이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이 국내 유입되어 실제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장(場)으로서 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지방정부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정동재 · 윤영근 · 염지선, 2022; Phillips, 202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민정책은 국가 차원의 이

민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이민정책의 중심이 “지역으로 전환(local turn)”되는 양상을 의미한다(Cleave, Wark & Kyeremeh, 2023).

한국 역시 종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 업무로 여겨져 왔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계 및 운영해오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이민정책을 정책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모든 단계를 사실상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추진은 고용허가제라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선발과 관리,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지원,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등을 통해 진행되면서 신속하고 빠른 정책 결정과 집행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 성과를 거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지역별 상이한 고용 수요와 산업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업종별 노동력의 수용과 공급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한계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체류기간이 증가할수록 세부집단별 외국인들이 가진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적시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정책 실패(비합법 체류자의 증가, 일터 및 생활영역 안에서 이주민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를 반복해왔다(이규용 외, 2021).

전술한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이민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후반 이후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을 모색해온바,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종래 중앙정부가 설계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수동적인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자체가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카운터파트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다양한 정책적 실험 조치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은 지역·업종별 고용 및 노동 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는 의사결정 단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숙련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추천 과정에서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9년 법무부 ‘인구정책TF’가 만들어지고,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2022년 발표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공론화되었다. 20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공식화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② 지자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 ③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 참여 및 인프라 강화가 제시되었다(법무부, 2024b), 이후 2024년에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면서 비자정책 운영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비자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및 광역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시행)이 시범사업 형태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법무부, 2024c; 2025a).

Ⅲ. 지역이민정책 추진현황과 쟁점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이 직면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이주민을 인식하고 지역에 초점을 맞춘, 지역/장소에 기반을 둔 이민정책(place-based policy)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역이민정책은 2010년대 후반 이래 한국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추진되기 시작한 바, 본고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019년), 계절근로 외국인력제도(2017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더불어 관련 추진현황을 기반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이 내재한 쟁점사안을 논의한다.

1.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및 인력난에 처한 지자체들(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 89곳)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고용 및 노동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외국인력을 추천하면, 중앙정부(법무부)에서 이를 검토 및 지자체들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최종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법무부, 2022). 총래 이민정책 추진단계 중 비자 발급 업무는 중앙정부(법무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 왔으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필요한 숙련 외국인력 업종 및 인원 규모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앙정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비자정책상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해당 시범사업은 단순히 지자체가 숙련/우수 외국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해 비자 발급을 중앙정부에 추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정착/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외국인(력) 정착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력)의 선발, 유치, 정착, 통합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주민/외국인의 체류 단계별 지자체의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역할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은 2가지 유형('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트랙)의 외국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적법한 신청을 위해 외국인력들은 일정 자격요건(경제력, 교육 수준, 한국어 구사 능력 등) 및 일부 규제조치들⁴⁾을 준수해야 한다. <표 1>은 지난 2년간(2022~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추진된 현황을 보여준다.

4) 해당 시범사업에 신청 및 선발되는 외국인(력)은 거주지(신청 지자체) 및 최소 거주기간(2년), 취업 가능 업종(법무부 및 지자체 지정 업종) 및 취업 가능 지역(신청 지자체+2년 후 신청지역이 속한 광역 지자체 포함) 등의 제한조치가 부과된다(법무부, 2025c).

〈표 1〉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F-2-R) 추진현황

광역시	2023년	2023년(추가 공모)	2024년
강원			횡성군(45), 고성군(165)
경기	연천군	가평군	가평군(50), 연천군(70)
경남	고성군(80)		거창군, 고성군(50), 남해군(10),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30), 창녕군(20), 하동군, 함안군(30), 함양군(20), 합천군
경북	고령군(33), 영주시(57), 영천시(132), 의성군(28)	성주군(40)	안동시(135), 영주시(51), 영천시(63), 상주시(120), 문경시(45), 의성군(9), 청송군(27), 영양군(5), 영덕군(25), 청도군(40), 고령군(50), 성주군(50), 봉화군(50), 울진군(20), 울릉군(10)
대구		남구	남구(50), 서구(20)
부산		서구(37), 동구(37), 영도구(36)	서구(40), 동구(40), 영도구(40)
전남	강진군(유형2), 영암군, 장흥군(유형2),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곡성군(20), 고흥군(35), 보성군(30), 장흥군(30), 해남군(60), 영암군(250)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고창군(38), 김제시(270), 남원시(34), 무주군(15), 부안군(127), 순창군(27), 임실군(57), 장수군(43), 정읍시(76), 진안군(16)
충남	보령시(유형1), 예산군		공주시(50), 보령시(115), 논산시(57), 금산군(150), 부여군(17), 서천군(50), 청양군(3), 예산군(36), 태안군(10)
충북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50), 단양군(35), 보은군(30), 영동군(30), 옥천군(20), 제천시(40)
총계	15곳	13곳	66곳

주: 1) 〈표〉상 괄호는 각 기초 지자체별 해당 연도에 배정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제1유형 : 지역우수인재) 규모를 의미하며, 제2유형(지역특화 동포 유형)은 쿼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수치에 포함되지 않음. 기초 지자체별 배정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의 경우 시군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괄호 안에 적시하였음.

2) 일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중 특정 유형(유형1, 유형2)만 신청하였음.

자료: 법무부, 연도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결과」; 이규용 외(2024) 재인용.

2025년 2월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보면 해당 제도는 지난 2년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개편조치가 단행되는바, 종래 인구감소지역(89곳)에 국한하여 시행되던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를 신설하여 종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전문(E-9), 선원(E-10) 체류자격자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요건을 일부 개선하여 한국어 능력 상향(TOPIK 4단계 이수) 및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업체들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법무부, 2025c).

〈표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지자체별 유치 외국인(력) 대상 정착지원 방안(2023년 기준)

정책영역	세부 정착지원 사업	지자체
고용/노동	외국인주민 종합상담(지원), 노동법, 안전 교육	부산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가평군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영암군, 가평군, 연천군
	일자리 지원(관련 교육, 상담)	제천시, 단양군,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기업-외국인 취업 연계	보령시, 예산군, 김제시, 가평군
	취업 후 지역정착 모니터링, 취업 후 애로사항 청취	김제시
	직업훈련 교육(자격취득 교육 지원)	부안군, 해남군, 영암군
교육	한국어 교육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컴퓨터 등)	제천시, 예산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장흥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대구시 남구, 고성군
건강/의료	통·번역 서비스 지원(동행통역, 문서번역), 건강 관련 교육	부산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주거, 복지	부동산 정보 제공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생활적응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부산시
	언어 지원, 문화 적응 지원, 문화탐방	제천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가평군
	다문화가족 정착 프로그램 지원	예산군
	외국인 쉼터 운영(주민소통 및 교류)	강진군
기타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	부산시
	유학생 취업 지원 교육	김제시
	안전 보험 제공	제천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심신·정서 지원	보령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김제시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20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별 정착지원방안」 내용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하였음.

2. 계절근로 외국인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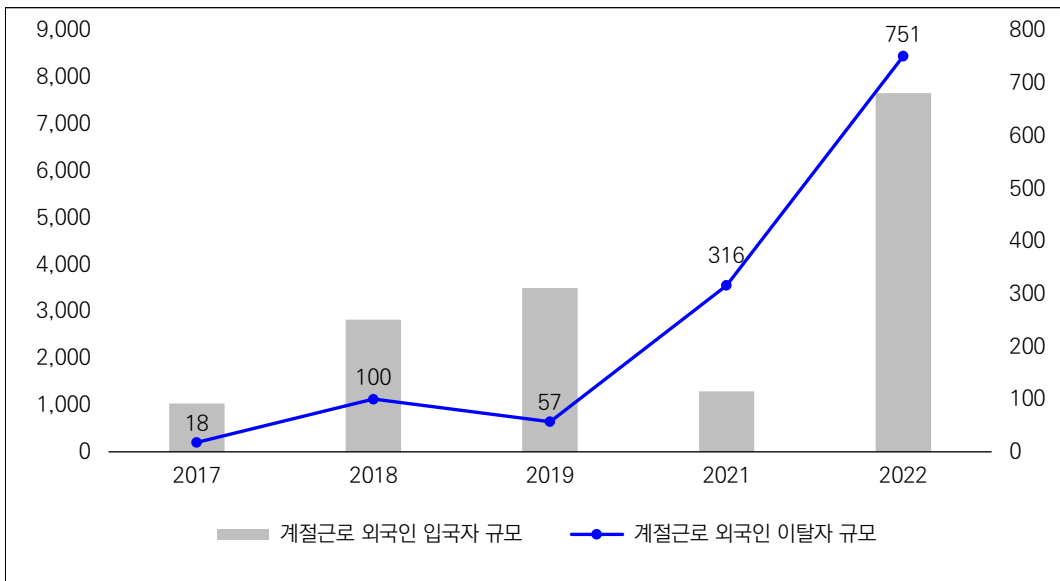
계절근로 외국인력제도는 상시고용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농번기 등 계절적, (초)단기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본 제도는 지자체 농어업 분야의 단기 및 계절 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계절근로 외국인 규모를 정하여 이를 신청하면 중앙정부(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허용되는 총 외국인력 수를

배정 및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무부 홈페이지). 제도 시행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인력 규모를 신청하고, 실제 배정된 외국인력들에 대한 관리업무까지 맡게 되어 외국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계절근로 외국인력의 고용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바, 지자체-송출국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한 해당 국적 인력의 고용방식,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 초청 및 고용방식, 마지막으로 국내 일정 체류자격을 갖춘 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 계절근로 외국인력의 고용 기간 역시 농업 분야 단기(90일) 고용에서부터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되어왔다(법무부 홈페이지). 2017년 계속사업 형태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본 제도의 참여 지자체 및 배정 인력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는바, 참여 지자체는 2017년 23곳에서 2019년 54곳, 2022년 114곳, 2024년 131곳으로 증가하였다. 계절근로 배정 인력 규모 역시 2022년 19,718명에서 2023년 2배 이상 증가한 40,647명, 2024년 상반기에는 49,286명에 이르는 상황이다(법무부, 2023c).

계절근로 외국인력제도 시행 지자체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한계들이 제기되어 왔다. 관련된 문제들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지자체들이 송출국 지자체들과 MOU 체결을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브로커들이 송출 및 인력 관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력이 수령하는 월급의 상당

[그림 2] 계절근로 외국인력의 연도별 입국자 및 이탈자 규모 추이(2017~2022년)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정보공개청구); 이규용 외(2024) 재인용.

액을 떼어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절근로 외국인력들이 직면한 열악한 노동 환경(휴일 미보장, 숙식비 과다공제)과 생활환경(언어, 지역 적응 교육 및 정보 제공 미비, 건강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이들이 지역 내 정착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 역시 202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한국농정, 2024).

3. 한계 및 쟁점 현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0년대 후반 이후 지역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나 계절근로 외국인력제도,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까지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첫째 문제는 정부 간 관계 측면에서 ‘어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두고 여전히 그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점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정 수준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착 지역(지자체)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자칫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 간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비자정책과 관련하여 종래 중앙정부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온 비자의 발급 권한을 두고 중앙정부(추천 권한만 부여)와 지자체(발급 권한까지 일부 부여 혹은 공유)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광역비자제도를 포함하여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이민정책 추진과정에서 비자제도 운영 관련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로 지자체가 현행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권한(추천권)을 넘어 그 이상의 역할(지역 체류 관련 비자 발급 등)에 대한 수행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이민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 등이 현재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종래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설계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활발하게 현장에서 논의되는 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지 못해 정책 현장에서는 지역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근자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민정책 관련 사례들은 대개 비자제도를 활용하여 비도심 지역에 외국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역이민정책은 단순히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들을 유치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⁵⁾ 예를 들면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무엇인지, 지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주민의 체류 단계별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민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간 역할 범위 설정 및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담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비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주민들을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방식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합리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이주민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체류 중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체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기꺼이’ 지역에 체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이 열악한 노동 및 생활환경이라는 다중적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지역특화형 비자와 같은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및 해당 분야(업종)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것이라는 시각은 오늘날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적 접근이라 하겠다. 이주민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실질적으로 포섭/통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특화된’ 노력이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결국 지역이민정책의 추진과정은 이러한 지역이 가진 내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들이 어떠한 고민들과 정책적 시도들을 해야 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IV. 해외 지역이민정책 추진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지역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에 비해 오랜 역사와 시행 경험을 가진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지역이민정책 추진 사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물론 숙련외국인력의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 및 이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에 일부 제시된 것처럼 지자체들이 제시한 지역정착방안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바 지역별로 ‘특화된’ 정착지원 방안이나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시된 대부분의 지원 방안들이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에서 시행해온 지원방안들을 답습하는 수준이라 여겨진다.

1. 이주민의 유치(attraction)보다 유지(retention) 방안을 더욱 고민할 필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이주 수용국들이 일정 기술 및 숙련인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이주민들이 비도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 다시 말해 비자 체제상 장기 혹은 영주가 가능한 체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의 지역 유입/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시행해온 주특정 지역이민체계(SSRM, 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Scheme), 지역스폰서이민체계(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지정지역이민협약(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등을 통해, 캐나다 역시 1990년대 이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시행하면서 일정 자격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력들을 비도심 지역으로 유치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 시 이들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제도적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 및 운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숙련 외국인력의 선발 및 관리 과정의 다양성을 부여하여 일률적인 자격조건이나 기준(교육 수준, 연령, 재정 능력, 언어 능력)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필요한 외국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설계·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선발 및 관리방식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캐나다 애틀랜틱 이민사업(AIP)의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력)의 선발 및 정착 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주정부 이민프로그램(PNP) 등은 연방-지방-지역 유관기관들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정착지원을 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나 계절근로 외국인력제도 등의 시행과정을 보면, 정책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력)의 유치단계에 상당한 노력이 집중되는 양상이며, 반면에 이들의 체류 이후 단계, 정착과 해당 비도심 지역 내 체류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이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 차원에서 초기 정착 지원방안들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특화된’ 지역별 정착 및 정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종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라 하겠다.

〈표 3〉은 지역이민정책의 성과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유사한 정책적 자극이나 설계에도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기준 캐나다의 AIP가 4개 애틀랜틱 지역에서 시행 이후 10년여에 걸쳐 이주민들을 얼마나 유지(retention)하고 있는가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수 이주민들이 급격히 타 지역으로 이출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 노바 스코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떠한 요인들이 동일한 지역이민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차이를 발생시켰을까?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역 내 이

〈표 3〉 캐나다 4개 애틀랜틱 지역의 외국인(력)의 정착 이후 정주 비율변화: 시계열 비교(2017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주 명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지역별 평균 이주민 유지 비율(retention rate)	88.6	87.6	86.1	86.1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55.3	51.5	49.5	45.8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61.1	35.3	25.0	24.1
노바 스코샤	73.0	66.7	66.0	53.9
뉴브런즈윅	70.5	50.3	47.5	45.1

자료: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2020), *Evaluation of the Atlantic Immigration 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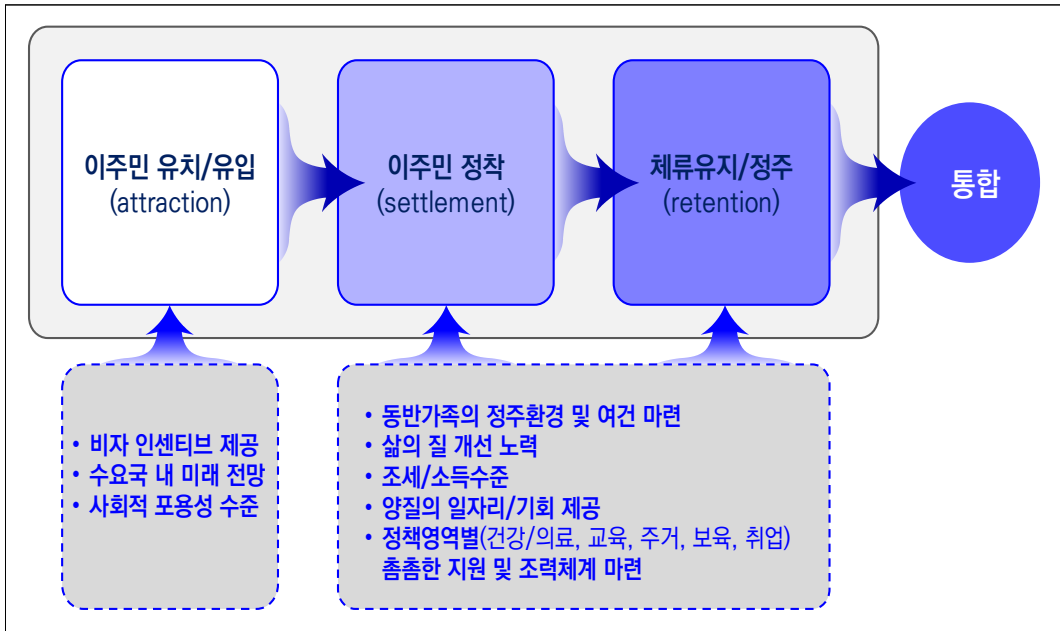
주민 규모,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종교 시설 접근성, 양질의 이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양질의 일자리, 가족(배우자)들의 취업 기회 접근성, 주거, 대중교통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여부,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 등이 복합적으로 비도심 지역 내 이주민들의 체류 상황과 연계될 것이라 여겨진다(Esses & Carter, 2019). 결국 지역이민정책은 양질의 숙련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이주민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역으로 유입된 이주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역에 머물도록 할 것인지, 인센티브 체계의 설계와 더불어 체류 이후 단계에서 지역별로 촘촘히 특화된 정착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 차원의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

2. 비자 인센티브를 넘어 이주민들의 지역 정주 방안을 모색

해외 국가들의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제 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이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들을 인구감소와 경제활력이 낮은 비도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형 비자 사업과도 작동 기제상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들의 지역이민정책 관련 시도들은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트랙)을 마련하여 운영상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주민의 비도심 지역 유입 및 선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의 정착, 정주(체류상태의 유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및 정착 서비스들이 내실화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특히 이주민들이 체류 이후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체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는바, 결국 이주민들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내 통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착 방안을 설계 및 운

영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가족 및 자녀 대상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이주민 친화적 환경과 정서(welcoming environment) 제공,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접근성 등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Kelly, Nguyen, & Triandafyllidou, 2024).

[그림 3] 지역이민정책의 추진 프로세스 : 이주민의 유치, 정착, 정주, 통합 과정



이주민들이 사회적 연계 및 네트워크가 없는 비도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자리(생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교통, 건강/의료, 교육, 주거, 여가 등)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Phillips, 2023). 더불어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은 개인만의 이슈가 아닌,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가족 결합 및 이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 역시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기에,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발전과 공존을 위해 이주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는 점이 지역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 지역이민정책 개선방안의 모색

본고는 근자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민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사안 및 해외 국가들의 관련 경험을 통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에 지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갈무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지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관계 차원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역할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특정 정부(중앙 혹은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 간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역할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정책 추진 단계별로 지자체가 참여 혹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입국 관리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체류관리 및 통합정책 추진 단계에서는 지자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를 정책 현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다시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 근자 들어 지자체별 이주민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지역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 통합기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어가는 상황인 반면, 지자체 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및 관심도, 정책 추진을 위한 이해도 등 정책 추진 역량의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 지역이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차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련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 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체류 외국인 관련 이슈(지역별 체류실태, 고용/노동실태)를 상호 공유 및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공적 영역이 이민정책 관련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앙(이민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지자체(‘체류 이후’ 단계의 실질적인 역할)-시민사회(지역 중심의 이민정책 추진과정에서 이주민의 정착, 통합 관련 현장 중심의 지원 및 조력) 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주민들의 지역 내 유입, 정착, 적응, 통합 과정에서 단계별 내실 있는 협업 네트워크를 마련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현재와 같이 비자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편익(영주자격 신청)을 위해 현

재의 비용(일정 기간 이상 비도심 지역 거주 의무화)을 감내하는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과 조건을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구비하고, 지역만의 특화된 정착 및 통합 노력을 향후 설계 및 추진해나가는 것 역시 고려해 볼만하다. 지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이주민 정착계획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노력 역시 필요하다. 캐나다 지자체들이 이주민 지역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정착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된 정착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 세분화 노력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자체별 이주민 대상 지원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이를 정착단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향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 [44]

[참고문헌]

- 법무부(2022),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2022. 7. 25.자 보도자료.
- _____(2023a), 「법무부, 지역이민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2023. 11. 24.자 보도자료.
- _____(2023b),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별 정착지원방안」.
- _____(2023c),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2023. 12. 28.자 보도자료.
- _____(2024a),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2024. 8. 13.자 보도자료.
- _____(2024b),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_____(2024c),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 _____(2025a),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2025. 4. 2.자 보도자료.
- _____(2025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5년 2월.
- _____(2025c),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2025. 2. 20.자 보도자료.
- 이규용·이종관·이해춘·정기선·주수인(2021),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24),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동재·윤영근·염지선(2022), 『데니즌십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

구원.

조하영(2024), 「등록외국인의 지역분포(I): 지역별 집단 이질성 분석」, 『MRTC 통계브리프』 No.2024-08.

중앙일보(2024),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서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589>

한국농정(2024), 「계절근로자 보호장치 · 운영규정 관련 법 · 제도 사실상 공백」,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47>

Akbari, A. H.(2023), "Regionalization of Migration: Some Rationale and Best Practices Across Advanced Countries," In Zimmermann, K.F.(eds) *Handbook of Labor, Human Resources and Population Economics*, Springer, Cham.

Astruc-Le Souder, M., J. Hesse, C. Hoffman, L. Kleine-Rueschkamp, and C. Özgüzel(2024), "The OECD Municipal Migration Database: Going Granular," OECD Regional Development Paper.

Bakshi, L., F. H. McKenzie, and J. Bolleter(2024), "Sticky Places for Regional Immigrant Settlement: A Literature Review,"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59(2), pp.401~442.

Beauchamp, T. and T. McMahon(2023), "Regional Migration and Settlement: Putting Down Roots to Revitalize Regional Communities in Australia," Settlement Services International.

Cleave, E., C. Wark, and E. Kyeremeh(2023), "Immigrant Attraction and Retention: An Explor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Wellbeing, Spaces and Society* 5, online version.

Esses, V. and C. Carter(2019), "Beyond the Big City: How Small Communities Across Canada Can Attract and Retain Newcomers," Pathways to Prosperity.

Kelly, M., M. Nguyen, and A. Triandafyllidou(2024), "Why Migrants Stay in Small and Mid-sized Cities: Analytical and Comparative Insights,"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24, pp.1013~1027.

Phillips, M.(2023), "The Right Settings for Migrant Settlement in Regional Australia," *The Policymaker*, <https://thepolicymaker.jmi.org.au/the-right-settings-for-migrant-settlement-in-regional-australia/>

Scholten, P. and R. Penninx(2016). "The Multilevel Governance of Migration and Integration," In G. Mascareñas, B., Penninx, R.(eds.), *Integration Processes and Policies in*

Europe(pp.91~108), IMISCOE Research Series, Springer, Cham.

Stump, T.(2022), “The Right Fit: Attracting and Retaining Newcomers in Regional Towns”.

United Nations(2025),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 2024: Key Facts and Figures”.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8/subview.do>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about/programmes/cfe/rethinking-regional-attractiveness/regional-attractiveness-brochure/rethinking-regional-attractiveness-brochure-en.pdf>